

최근 국제 환경규제의 동향과 영향

이 자료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주간해외특자정
보호 ('92. 4. 18)에서 전재한 것이다. <편집자註>

1. 머리말

최근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구환경의 악화가 자연생태계의 自淨限界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지만, 이로 인한 환경피해가 세계 도처에서 속출하고 그 피해정도가 인류의 생존기반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와 自省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지구 환경보전은 더 이상 환경보호단체나 생태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세계 각국의 정부, 기업, 소비자들의 공통 바램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논의대상도 단순한 경각심 차원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치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하는 실천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를 사회·경제활동과 결부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접근방식이 새롭게 부각되어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추구가 오늘날 모든 환경논의의 중심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앞으로 환경논의의 파급범위가 환경보호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선진 각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속속 강화되고 있으며, 각종 국제회의에서 환경문제가 빠짐없이 중요의제로 등장하여 국제적 협력이 적극 모색되는 한편 국제환경협약 체결교섭이 다방면

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오는 6월에 개최될 유엔환경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UNCED*)는 유엔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환경대책 방향을 가름 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하 본고에서는 환경문제의 대두 배경과 최근 세계적인 규제강화 동향, 그리고 이것이 통상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을 살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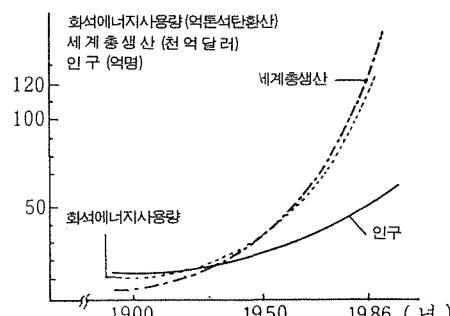
2. 환경문제의 대두 배경과 국제적 논의

오늘날 세계는 산업혁명 아래 급속한 산업화 과정과 경제 발전을 이루어 오면서 고도의 물질 문명사회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대량생산·소비·폐기로 대표되는 현대산업사회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온 대신에 한편으로 대기·수질·토양 오염, 각종 산업 폐기물 범람 등으로 생활의 質을 저하시키고 지구의 자정능력을 넘는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자연자원의 고갈을 가져왔다. 더욱이 인간의 생산과 소비활동 규모는 그 증가추세가 점차 빨라져 금세기에 들어서 만 世界人口는 3배, 경제규모는 20배로 늘어났고 또

한 공업생산량은 50배, 화석에너지 사용량은 30배로 신장하였으며, 그 증가의 대부분이 1950년대 이후의 수십년간에 이루어졌다.

만약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계속된다면 자원소비량, 각종 폐기물 및 오염물질 배출량은 21세기 초에는 현재의 수배 내지 5배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1〉 세계 총생산 · 인구 · 에너지사용량 증가 추이



〈자료〉 World Watch Institute, 'State of the World', 1987.

古澤廣策, 地球環境問題와 國際自由貿易, 貿易과 關稅, 1991. 6에서 재인용(p. 25)

석유자원의 한 예를 보더라도 현재의 소비량을 전제로 할 때 40여년 후에는 완전히 고갈되리라는 전망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지구환경 문제가 인류의 생존기반마저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제발전의 모순에 대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1972년의 로마클럽(*The Club of Rome*)¹¹의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였다. 현재의 양적 성장추구는 100년이 지나서 한계에 부딪쳐 파국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면서 환경보전과 병행한 저성장경제로의 이행 필요성이 설명되어졌다. 이에 따라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최초의 공식 국제회의로서 유엔인류환경회의가 개최되어 당시 환경권을 인류의 기본권으로 천명한 스톡홀름선언이 채택되었다. 이후 지구환경문제는 냉전의 와중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1980년대 들어 戰後 세계의 정치·경제 질서를 주도해 온 냉전체제가 와해되면서 종전의 이념대립 대신에 환경문제가 인류의 공통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스톡홀름宣言의 10주년인 1982년 유엔은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을 채택하고, 그 이름해 지구환경문제를 다룬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 Development : WCED*)의 설치를 결의하였다. 이어 이 위원회는 1987년 지속 가능한 발전추구와 이를 위한 각 분야에서의 행동을 호소한 보고서 「Our Common Future」를 유엔총회에 제출, 그 실시가 채택됨으로써 국제적인 지구환경대책 마련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표1〉 입증된 지역별 세계 석유부존량 및 유지연수

(1980년과 1989년)

	석 유 부 존 량		1989년 생산을 적용시 유 지 연 수
	1980	1989	
	(10억 배럴)		(유지연수)
중 동	362	660	110
중 남 미	70	125	51
소련 및 동유럽	66	60	13
아프리카	55	59	28
아시아, 태평양	40	47	20
북 미	39	42	10
서 유럽	23	18	13
세 계 計	655	1,011	44

〈자료〉 British Petroleum,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London: Various years),

Lester R. Brown 외, 「지구환경보고서」, 김범철, 이승환 역, 따님(1991)에서 재인용(p. 48).

동 보고서의 주요 논점은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지구전체의 발전이 미래 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生活의 質개선 및 환경보호와 병행한 발전·성장방식을 모색하고 이에 의해 현 세대간의 사회적 공평성과 미래세대와의 공평성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세대가 미래세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원을 사용하면 남는 것은 쓰레기와 오염뿐이고 미래세대의 생존가능성마저 빼앗게 될 뿐이며, 마찬가지로 현재 世界人口의 20%인 선진국이 세계 자원의 80%를 독점 사용하는 남북간 불공평 성도 개도국의 생존권을 위협하므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89년 G-7 파리정상회담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과 함께 경제정책과 바람직한 환경보호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는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은 모든 환경문제 논의와 경제정책 수립시 최대명제로 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국제사회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환경문제를 중요의제로 채택하고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최근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주요 토의분야에는 대기보전, 토양보전, 해양 및 담수보전, 유해폐기물 처리, 삼림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분야를 비롯, 이를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해결방안의 모색과 추진수단으로서 국제법 및 제도적 개편 등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선언 및 성명발표, 행동계획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그중에서도 국제환경협약의 채택을 통한 강제적인 국제법 규범을 형성하는 것이 두드러진 추세이다.

3. 국제적 환경규제의 동향

가. 선진 제국의 환경규제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개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선진 각국은 양적발전과 질적발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환경우선의 경제정책을 표방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관련규제가 각국의 정책 및 입법에 속속 반영되어 가고 있고, 환경규제내용도 한층 강화되는 동시에 종래 소극적 차원의 오염방지 위주

에서 예방적 차원의 오염원천봉쇄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1) 獨逸

獨逸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환경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로 일찍부터 환경보호를 정책의 우선과제로 채택해 왔다. 특히 폐기물 처리와 수질보전, 대기오염방지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와 환경개선이 일부 이루어지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활용(Recycling) 강화에 역점을 둔 폐기물회수 규제조치를 발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1991년 12월에 발표된 동 규제조치는 먼저 1단계로 포장재를 대상으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게 회수의무를 부과하되, 그 구체 시행은 ①수송용 포장재(콘테이너, 박스 등) ②2차적 포장재(도난방지, 안전, 선전용 등) ③판매용 포장재(컵, 캔, 병 등)의 3종류로 나누어 ①은 즉각 시행하고, ②는 1992년 4월부터, ③은 1993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獨逸은 이번 조치로 1995년까지 포장재의 80%를 회수하여 그중 유리, 알루미늄 등은 90%, 골판지, 플라스틱 등은 80%까지 재활용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응하여 독일내 포장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최종소비자로부터의 개별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전문회사(Dual System Deutschland : DSD)를 공동 설립하여 회수업무를 대행케 하고 있다. 그 과정은 기업이 DSD에 요금(예: 곤포재 건당 2페니 히)을 지불하고 'green point' 마크를 自社 포장재에 부착함으로써 개별적인 회수의무를 면제 받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포장재 회수에 이어 1994년부터는 중고차 및 中古 전기제품에 대해서까지 제조업체 등에 회수의무가 부과될 계획이다. 그러나 전기제품의 경우 電氣·電子를 전원으로 하는 모든 제품이 포함되어 그 회수대상이 광범위하고 회수기술 여건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동차부터 회수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獨逸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미 자발적인 폐차회수에 나서고 있다.

한편 獨逸에서는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이 매우 높아 환경친화상품을 선택하는 Green consumer 운동이

〈표-2〉 獨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 및 전망

(단위 : 백만톤)

	1966	1970	1978	1986	1995
CO	12.3	14.0	12.9	8.9	4.3
SO ²	3.4	3.7	3.4	2.2	1.0
NO	1.9	2.4	2.9	3.0	2.0
먼 지	1.8	1.3	0.7	0.55	0.5

〈자료〉 獨逸聯邦 統計廳

활발하여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상품의 환경영향, 기업의 환경대책(환경정책 유무, 포장재 간소화, 재생 및 자원절약 노력 등) 등을 소개하는 「Green consumer guide」가 소비자의 구매지침서로서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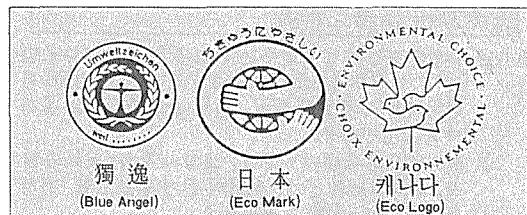
〈표-3〉 Green consumer guide의 주요 제크 항목

- 기업으로서 환경정책, 방침을 서면으로 정하고 있는가
- 지역 사회의 미관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유통면에서 공공 교통기관을 이용하거나 무연휘발유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병 등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포장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는가
- 소비자들의 환경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CFC(프레온가스) 사용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는가 등

〈자료〉 東海銀行, 調查月報, 1991. 12.

또한 獨逸에서는 가장 먼저 환경마크제도(Environmental labelling)가 정착되어 환경우수상품에 부착되고 있다. 獨逸의 환경마크인 Blue Angel은 현재 64개 품목의 3,600여 상품에 부착되어 있는데, 소비자에게는 품질표시로까지 인식되고 있으며 기업으로부터도 판매 확대 및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마크제는 1989년에 日本과 캐나다, 1991년에는 北歐諸國과 프랑스, 포르투갈에서 각각 도입하는 등 선진 각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림-2〉 각국의 환경 마크



〈자료〉 OECD, Environmental Labelling in OECD Countries, 1991.

앞으로 獨逸은 환경책임보험도 만들어企業들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 환경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시킬 계획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제조기업들이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책임지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2) EC

EC는 1987년에 발효된 유럽單一化 의정서(Single European Act : SEA)에 의거 환경정책 시행에 대한 법적 배경을 갖게 된 것을 계기로 환경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EC는 역내경제통합 추진과 관련, 각국의 환경규제 및 기준의 통일화를 적극 서두르고 있는데, EC 차원에서 최소한의 환경규정 및 기술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적용은 개별회원국이 수행토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991년에 만 자동차 배기ガス 규제 등 대기오염기준 강화 자동차·항공기·가전제품 등의 제품규격으로 최대허용 소음기준치 설정, 新化學物質에 대한 사정통보 절차도입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화학물질 사전통보 절차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화학물질의 양·온도, 안전대책, 화학물질의 누출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유해물질로 전환시키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표-4〉 EC 환경선언 내용

- 유럽에서의 환경 파괴를 막고 전세계 환경 보호운동에 앞장선다.
- 환경에 관한 정보 공개를 촉진한다.
- CFC 사용을 2000년까지 전폐한다.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CO₂ 등의 배출을 억제 한다.
- 세계의 삼림을 보호한다.
- 동구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유럽 환경청¹⁾을 설립한다.
- 환경권²⁾을 제창한다.

주 : 1) 유럽환경청의 주요업무는 환경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 설립후에는 EFTA 및 동구권 국가등 비EC 회원국에게도 개방할 방침. 현재 설립장소등을 둘러싸고 교섭 진행 중.
2) 환경권으로서 대기 · 수질 · 토양의 정화, 식료의 보전, 환경정보의 공개, 시민의 참가 등 포함, 건강한 삶을 누릴수 있는 권리를 의미.

〈자료〉 〈표3〉과 같음.

이밖에도 최근 EC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주요 환경조치들로는 ①EC環境마크제채용, ②폐기물 회수와 리사이클링 강화, ③환경감사 제도 도입, ④CO₂稅 도입 등이 있다.

환경마크제는 1993년 실시를 목표로 현재 환경마크 부여기준³⁾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나,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금명간 합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 회수와 리사이클링 강화는 EC의 폐기물 삭감정책의 하나로 EC 위원회가 구체안을 작성 중인데, 2000년까지 ①폐기물은 1990년 수준에서 10%삭감하고 ②리사이클링 량을 3배로 늘리고 ③폐기 처리량을 1/6로 감축하는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여 1단계로 병·캔·종이·플라스틱류의 회수·리사이클링을 우선 실시토록 하는 것이다.

環境監査는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 스스로 평가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일부 기업들이 대고객 이미지개선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EC는 환경감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①모든 기업을 환경감사의 대상으로 하고 ②업종과 규모별로 감사항목을 지정하며 ③기업 자신이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결과는 허가받은 제3자 (환경컨설턴트)의 확인을 받도록 하며 ④그 결과를

〈표-5〉 EC의 대기오염 방지 규제 현황

- 자동차
 - 무연휘발유 의무화
 - 배기가스 규제(질소·유황산화물 기준은 미국 수준으로 최근 엄격화)
- 공장
 - 신규공장 설립 허가시 공기오염 방지를 위한 허가제 실시
 - 1988년 화력발전소 및 중화학 공장의 아황산, 질소 배출에 따른 산성비 방지를 위해 15년 감축 계획 수립, 시행
 - 아황산 가스는 2003년까지 1980년 수준의 60% 감축
 - 질소산화물은 1998년까지 30% 감축
- CFC 사용규제
 - 2000년까지 대부분의 CFC 사용 금지
 - 1995년까지 CFC 사용량을 85% 감축하고, 1997년까지 특정 CFC등의 사용금지

〈자료〉 대한무역진흥공사, EC 환경정책, 1991. 12.

공표하는 식의 개념을 짜고 있다. 환경감사제가 도입된다면 신용등급과 같이 환경등급도 기업평가의 중요요소가 될 것이다.

탄소세는 이미 작년 EC환경장관회의에서 기본합의가 이루어져 1993년 시행을 목표로 구체 조정 중으로 금년 중 최종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 내용은 초년도에 석유 1톤당 3달러를, 그 이후 매년 1 달러씩 세율이 인상되어 2000년도에는 석유 1톤당 10달러의 세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타 석탄 등 연료도 CO₂ 배출량에 비례하여 과세된다.

(3) 美 國

美國은 1989년 Exxon사의 알래스카연안 원유유출사고를 계기로 기업의 환경논리에 대한 비난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관련법이 잇달아 강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1990년에 수정된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은 대기청정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이를 위해 산업시설 및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오염기준 미달 지역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무공해 자동차 운행, 대기오염방지 기술개발 촉진 등의 실시를 강제하는 광범위한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오염미달 지역에서의汚

〈표-6〉 美國 대기정화법의 주요 내용

대상	주요 내용						
도시 스모그 대책 (대기청정기준 미 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시설의 증·신축시 허가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배출원간의 배출권 매매 허용 ◦ 자동차 배기 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소 산화물 1마일당 0.4g 이하 · 탄화수소 1마일당 0.25g 이하 · 차량별 의무이행 시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경승용차 경트럭</td> <td style="padding: 2px;">◦ '94년형 모델부터 3년에 걸쳐 삭감</td> </tr> <tr> <td style="padding: 2px;">중형트럭</td> <td style="padding: 2px;">◦ '96년형 모델부터 3년에 걸쳐 삭감</td> </tr> <tr> <td style="padding: 2px;">대형트럭</td> <td style="padding: 2px;">◦ '98년형 모델부터 3년에 걸쳐 삭감</td> </tr> </table> </div>	경승용차 경트럭	◦ '94년형 모델부터 3년에 걸쳐 삭감	중형트럭	◦ '96년형 모델부터 3년에 걸쳐 삭감	대형트럭	◦ '98년형 모델부터 3년에 걸쳐 삭감
경승용차 경트럭	◦ '94년형 모델부터 3년에 걸쳐 삭감						
중형트럭	◦ '96년형 모델부터 3년에 걸쳐 삭감						
대형트럭	◦ '98년형 모델부터 3년에 걸쳐 삭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의 배출가스 자체점검 장비 부착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년형 모델부터 · 출고후 10년간 또는 주행거리 10만 마일 보증 ◦ 무공해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부터 단계적 도입(25개 도시) ◦ 청정 연료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부터 재합성 가솔린 판매 (오존오염 미달지역) · '92년부터 산소함유연료 판매 (CO 기준 미달지역) · '92년부터 유연연료 판매 금지 						
산성비 대책	1996년까지 CO ₂ 배출량 500만톤 삭감. 2001년까지 500만 톤 추가 삭감.						
유해화학물질대책	189종 대상으로 10년간 배출량을 90% 삭감						

〈자료〉日本經濟新聞, 1990. 11 및 한국무역협회, 주간통상정보, 1990. 11. 26.

染源 신설 및 증설시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오염배출권 매매제 (*marketable permit system*)를 도입, 기업내부간 또는 기업외부간 거래를 통해 신규설비로 인한 오염배출 추가 증가분 이상을 기준 오염원에서 삭감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다. 따라서 배출량 삭감에 앞서 성공한 기업의 경우 자신의 汚染排出權을 타기업에게 판매함으로써 자신의 오염 방지 투자재원 일부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리사이클링강화와 관련 1990년 현재 全美 38개 주에서 140여 품목에 대한 리사이클링 의무화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음료용기의 豫置金還給制(*Deposit refund system*)가 실시되고 있다. 폐기물관련 규제법 중 자원보호회복법 (*Resource conservation recovery act*)을 수정한 포함환경처리보상

책임법 (*Super fund法*)의 경우 산업폐기물에 의해 토지가 오염되는 경우 해당오염토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사용한 기업은 무과실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물론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과거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소급되는 엄격한 내용으로 美國進出 외국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1991년부터는 CFC(프레온가스) 및 할론가스를 포함하거나 사용해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는 오존파괴세 (*Ozone depleting excise taxes*)가 부과되고 있으며, 더우기 금년 3월에는 유자망어업을 전면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모든 수산물과 관련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된 바 있다.

나. 국제환경협약의 체결동향

현재 유엔에 보고된 국제환경협약은 150여개에 달하고 이중 1972년 스ток홀름회의 이후에 체결된 것만 110여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 적용범위와 내용면에서 1970년대 협약은 특정국가간·지역차원의 협력을 규정한 것이 대부분이며, 범지구적 차원의 협약은 1980년대에 접어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폐기물 원경이동에 관한 바젤 협약 등 기체결된 협약과 6월 체결을 목표로 현재 교섭중인 기후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동방지협약 (*Convention to prevent climate change*) 및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협약(*Convention to protect the diversity of the world's living things*) 등이 있다.

더우기 오는 6월 개최되는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에는 각 방면의 실천계획들을 구현하기 위한 대기, 삼림, 담수, 해양생물 등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국제협약 추진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체결되는 국제환경협약은 주로 특정환경오염 또는 파괴물질의 배출·처리·교역 등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비가입국에 대한 경제·통상제재 등 각종 규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이를 주요 환경협약별로 살펴보면, 몬트리올 의정서는 가입국에 대해 규제물질인 프레온가스와 할론의 생산·소비감축 스케줄을 설정하고 非加入國에 대해서는 규제 물질 뿐 아니라 함유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된 상품에 대해서까지 교역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 CFC의 경우 가입국은 1986년 수준으로 소비량을 동결해야 하며 1995년부터는 1986년의 50%, 1997년부터는 15%로 그 사용량을 줄여나가 2000년부터는 전량 폐기해야 한다.

또한 비가입국에 대해서는 금년 5월 27일부터 CFC 함유제품(자동차, 냉장고, 에어콘 등)의 가입국에 대한 수출이, 1995년부터는 CFC를 사용해 제조된 제품(반도체, 정밀가공기기 등)의 수출도 금지된다. 우리나라도 금년 2월 27일 가입신청서를 제출, 유예기간 9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될 예정으

로 있어 국내업계도 올해부터 CFC사용 총량규제를 받게 되며 이의 재생 및 회수이용 기술개발과 대체물질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대체물질 개발에 이미 착수한 美國과 EC가 CFC 전면 폐기 기간을 1995년으로 5년이나 앞당길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빈번한 국제이동에 대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바젤협약은 총 47종의 유해폐기물에 대해 발생국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처리 및 국가간 교역에 대한 엄격한 요건 충족을 명시하는 한편 비협약국과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다. 금년 5월 발효예정인 이 협약에 우리나라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유해폐기물 가운데 재활용 목적의 원료도 포함되어 있어 고철, 제지, 화학원료 등 재생원료사용산업 및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동방지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화석에너지의 사용규제와 CO₂ 배출억제 목표를 설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현재 격렬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日本과 EC는 CO₂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고정시키자는 안정화 목표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미 독자적으로 CO₂ 삭감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일부 선진국은 2010년까지 현 수준보다 25% 삭감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美國은 억제목표의 구체적 실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도국은 선진국 책임론과 경제발전권리를 주장하며 일정기간의 유예조치 적용과 협약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4차례의 교섭회의에도 불구하고 각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는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의 협약체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번 UNCED에서는 일반적 방향성에 대해서만 먼저 합의하고 구체적 규제대책은 각국간 이해조정과 국내정책 및 제도정비가 마련될 때까지로 미루는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 움직임은 화석에너지 소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며 금후 각국의 에너지 대책 및 산업정책 수립에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표-7〉

주요 국제환경협약 현황

국제협약	규제 대상	규제 내용	관련 산업	비고
몬트리올 의정서	특정CFC, 할론, 사염화탄소, 메틸 클로르포름, 기타 CF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 및 소비의 전면금지를 위한 단계적 감축 비협약국에 대한 교역제한 규제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CFC〉 '89이후 '86의 100%이하 '95년 50% '97년 15% 2000년 전폐 〈할론〉 '92 이후 '88의 100%이하 '95년 50% 2000년 전폐 〈기타CFC〉 '93 이후 '89의 80%이하 '97년 15% 2000년 전폐 〈사염화탄소〉 '95이후 '89의 15%이하 '95년 70% 2000년 전폐 	냉동, 냉장업, 자동차, 항공기, 반도체, 전자, 정밀기계, 소화기	'87.9 채택 '89.1 발표 '90.6 개정 현재 73개국 가입
바젤협약	18개 산업폐기물, 27개 중금속·독성화학물질, 2개 생활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협약국과의 수출입 금지 수출은 자국에서 그 폐기물 처분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리사이클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한정 국가간 사전통고를 의무화, 수출국은 수입국의 허가를 얻어 월경 이동 허용 유해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방법의 환경상 안전성 보장 유해폐기물의 이동이 예정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수출국 책임 하에 재수입 의무화 	화공업, 각종제조업, 의약업, 농업 운수업	'89.3 채택 '92.5 발효 예정
기후변동 방지협약	CO ₂ 등 지구온실 효과 가스	CO ₂ 배출 규제	에너지생산 및 이 용산업, 각종제조 업, 수송, 교통신 업	협약교섭중 '92.6 채택 예정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협약	유전자, 생물의종, 생명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의 종 이용 및 개발 생명공학의 이용 및 개발 	의약업, 농업, 임 업, 생명공학 이 용산업	협약교섭중 '92.6 채택 예정

(자료) 日本經濟新聞, 1992. 3 및 한국무역협회, 무역, 1992. 2.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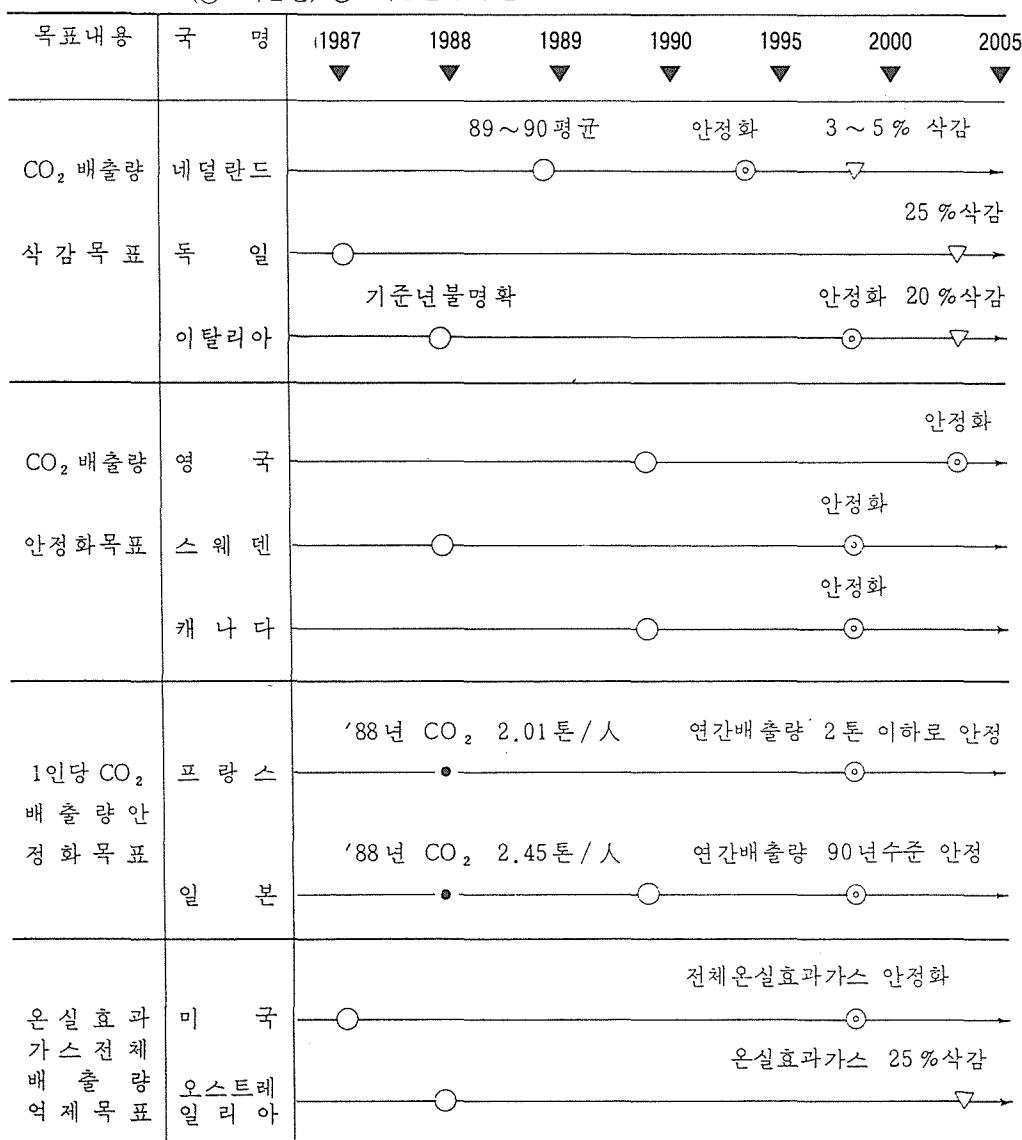
다. 유엔環境開發會議 전망과 주요 쟁점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세계 70개국 이상의 국가원수를 포함하여 유엔 산하 각국의 정부관사, 학계 및 경제계 대표, 비정부 환경단체(*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3〉 세계 주요국의 CO₂ 배출 억제 목표

(1991년 3월 현재)

(○ : 기준년, ◎ : 기준년과 동일수준으로 안정화, ▽ : 기준년 수준에서 삭감)



주 : 기타 국가의 입장

- 소련, 동구 중국, 아랍산유국 : CO₂ 규제에 신중 또는 소극적
- 대다수 개도국 : 선진국이 우선하여 CO₂를 억제해야 함

〈자료〉 日本開發銀行, 調査, 1991.

ganization : NGO) 등 2만여명이 참석 할 예정이다.

이번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전체회의와 3개 실무회의로 진행되며 지구환경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룰 예정이므로 지구서밋(*Earth summit*)로 지칭되기도 한다. 주요 논의사항들로는 전술한 기후변동방지협약,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협약 등의 체결을

비롯 국가와 개인의 환경보호의무를 선언할 지구헌장(Earth charter)과 이의 구체적 행동지침을 정하게 될 「여젠다 21」(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보전계획)의 챕터이 이루어지고, 개도국을 위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체계 마련과 이를 주도해 나갈 지구환경기구의 정비 등에 관한 방안도 모색될 예정이다.

〈표-8〉 유엔사무국 제시 「어젠다 21」재원 조달 방안

〈국제적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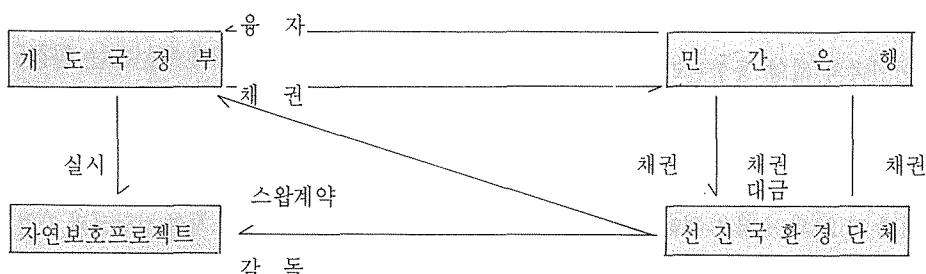
- 기존 제도의 확대
 - 다국간 ODA (세계은행내 GEF¹⁾ 사업 확대 등)
 - 이국간 ODA
 - 새로운 자금 확보책
 - SDR (IMF의 특별인출권)의 활용
 - 지구 공공재 사용요금 징수제도 (공해상 이로행위 등에 대한 요금 부과)
 - 환경·체무 스왑 (natural debt swap)
 - 오염배출권 매매
 - 환경우표 (통상 우편요금에 부가하여 부가분을 국제기금으로 수납)
 -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기부

· NGO/non-governmental orga

- 기존 제도의 충실
 -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변경(국방예산 삭감분을 환경재원으로)
 - 자연보호 등을 위한 오염세 징수분을 환경에 우선 할당
 - 새로운 자금확보책
 - 환경세 (CO^2 의 배출량에 비례한 과세, <예> 네덜란드의 CO^2 稅)
 - 환경목적세(사용처를 환경에 한정한 세를 신설 또는 증세)
 - 오염배출권 매매(국가 몫의 오염배출권을 민간기업에게 판매)
 - 환경채 반해(자리세대의 세금으로 상환)

주 : 1)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운영되는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al facility:GEF) 1991년 설립 개시하여 3개년마다 13억 달러가 책정

2) 개도국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개도국 정부가 자국통화로 자연보호프로젝트를 추진도록 하는 것으로 1984년 볼리비아를 시발로 지금까지 총 18건, 99백만 달러의 환경·채무 스왑 실시



〈자료〉 日本經濟新聞 1992. 3. 里 Institute for Int'l Economics, Int'l Economic Insights, 1991. 12. - 1992. 4.

이를 주요 쟁점 사안별로 살펴보면 앞으로 지구환경질서의 기본규범이 될 지구현장은 사무국이 작성한 초안에 의하면 ▲개도국의 개발권을 인정하되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고 ▲개발은 현재와 미래세대의 발전과 환경적 필요성에 부합해야 할 것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적 사고방식을 명시하는 한편, ▲환경오염물질의 이동금지 원칙 ▲환경오염 사전예방 원칙 ▲오염자 부담 원칙 ▲환경재해의 통보원칙 등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와 개인의 행동원칙을 맹라하고 있다.

지구현장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동계획인 「어젠다21」의 초안은 대기·해양·삼림·토양보전 및 폐기물 관리 등 14개 환경분야에서의 구체적 행동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외에도 국제경제측면, 재원·기술이전, 국제환경기구정비 등 행동계획실천을 위한 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경제측면에서는 환경규제가 보호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양자의 조화를 GATT등 국제기관의 검토과제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통상규절 모색을 위한 다자간의 논의를 활발히 할 것으로 보인다.

14개 분야의 행동계획은 ▲대기보전책으로 국별 에너지 수요목표 설정, 지속가능한 에너지개발 촉진, 환경세 부과 ▲삼림보전을 위한 식임과 재식임 촉진, 국제기금 창설 ▲육상자원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 ▲해양보호를 위해 연안국의 해양통합적 관리 인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중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환경세와 국별에너지 수요목표 설정이다. 환경세는 석유 등 에너지에 과세, 환경보전기금을 확보하고 에너지소비를 억제하려는 것이나, 국별에너지 수요목표 설정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의 억제요인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다소비국으로부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연안국의 해양 통합관리 인정도 영해권이 200해리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 때문에 이해당사국간 논란이 예상된다.

재원문제와 관련하여 사무국은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어젠다21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요자금을 매년 1,250억 달러로 시산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방법으로 ▲선진국 방위비 삭감분 전용과 ▲環境稅 도입을 주장하고 이밖에 ▲環境·債務스와프

(natural debt swap)에 의한 채무삭감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환경우표 발행 ▲NGO의 기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재원조달방법, 대상사업결정 등에 관한 구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본회의로 넘겨질 전망이다. 더우기 선진국측이 소요자금 시산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하고 있어 자금규모가 본회의에서 하향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밖에 사무국은 각국의 환경정책 실천상황 감시 및 보고기능을 가진 환경기구의 정비와 관련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와 신탁통치이사회를 개편하여 환경안전보장이사회를 신설하자는 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기존의 유엔환경계획(UNEP) 및 유엔개발계획(UNIDO)의 개편을 통해 대처해 나가자는案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세해지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지구현장과 어젠다21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유엔환경개발회의 각 참가국들이 합의한 준수공약이기 때문에 향후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각종 국제환경협약 및 각국의 환경대책을 이끌어갈 기본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통상분야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선진국 주도로 각국 및 국제적 환경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규제범위도 환경오염원뿐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활동까지 포함하는 등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규제의 파급영향도 관련산업의 생산·소비 또는 통상분야의 직접 규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체제, 생활양식, 가치관의 변화까지 수반하고 있다.

가. 자유무역질서에 우선하는 환경규제

환경규제가 기존의 자유무역질서를 재편하는 새로운 통상규절으로 대두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관련한 통상문제의 쟁점은 비가입국에 대한 교역 규제 및 각종 정책적 규제조치의 정당성과 자의적 적용 가능성, 그리고 多者間 환경무역회의(Green round) 출범 논의로 집약될 수 있다.

최근 체결되는 국제환경협약은 대부분이 비가입

국의 무임승차(*free rider*) 방지를 위해 통상규제 및 협력제 한 등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으며, 선진각국의 일방적인 환경규제조치는 무역제한 조치와 연계되어 대체물질을 생산치 못하거나 엄격한 환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개도국에게 새로운 非關稅障壁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선진국의 환경기준 이면에는 자국산업 우선주의가 자리잡고 있어 그 적용기준이 공정치 못하고 GATT등에 제소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도 하다.

GATT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의 근거로 원용되는 현행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가 불분명한 점을 인정하고, 환경무역 실무작업반을 설치, 국제환경협약의 무역관련 규정과 GATT原則과의 상충여부, 각국의 국내법상 환경기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보호를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은 이미 각국에서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로 「어젠다 21」에서 「지속가능한 무역질서」가 금후 검토과제로

상정된 것을 비롯, 현행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도 협상분야별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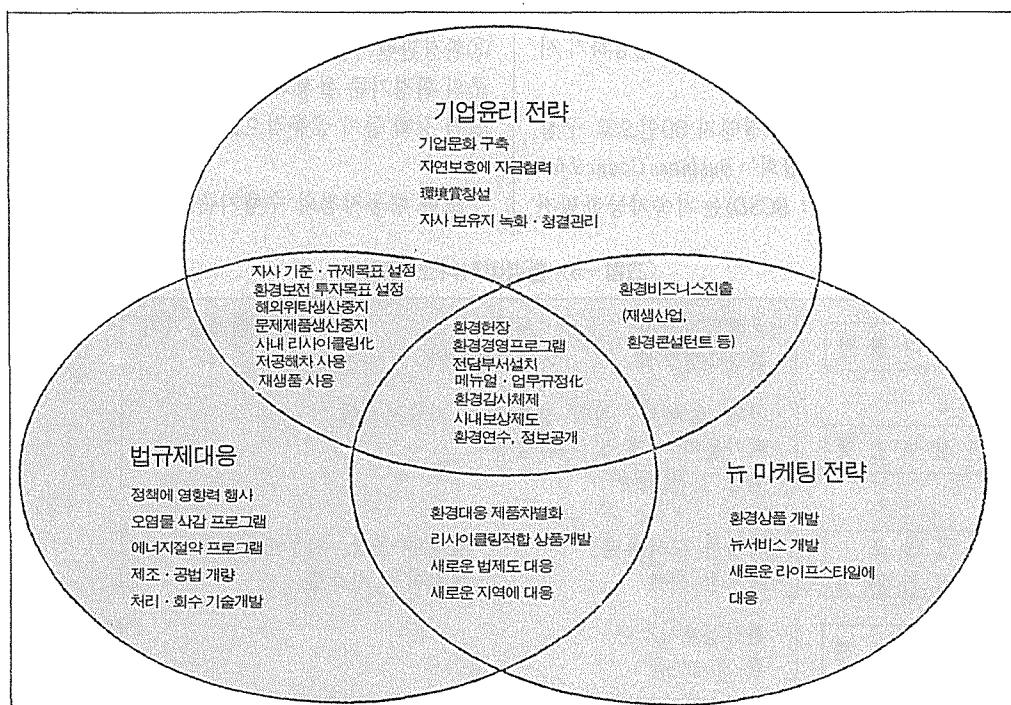
특히 기술장벽협정(TBT Code)에서는 규율대상에 기술임양 뿐만 아니라 상품의 특성과 工程別 생산방법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상품수출을 위해 제품의 환경기준을 강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 일부에서는 환경파괴적인 생산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환경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GATT 제6조(덤핑수출금지)의 개정을 제안하는 한편, 아울러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속 가능한 국제무역질서를 논의하기 위한 多者間 환경무역회의(Green round)의 개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나. 소비자들의 환경보호우선 경향

선진국 소비자들 사이에는 구매활동에서 환경보호우선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獨逸의 환경마크제나 유럽의 *Green consumer guide*의 예에서 볼

〈그림-4〉 기업의 환경문제 대응전략



〈자료〉野村綜合研究所, 財界觀測, 1991. 7

수 있듯이 환경에 우수한 기업과 상품을 판별, 다소 가격이 높아도 환경에 우수한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행태가 두드러지고 있다. 1989년 갤럽조사에 의하면 美國 소비자들의 75% 이상이 환경문제가 자신의 구매결정 및 습관을 바꾸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답하고 있으며, OECD보고서³⁾에서도 獨逸, 캐나다 소비자의 80%가 환경전선상품에 대해 기꺼이 프레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소비자들간에 자신의 소비로 야기되는 환경파해를 犯罪로 인식하는 풍조가 확산되면서 소비지향 생활양식을 지양하고 자원절약과 재활용운동을 몸소 실천하는 등 환경지향적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 움직임은 금후 사회·경제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부와 기업에 대해 경제성장에 우선하는 환경정책을 채택하고 환경주의 경영을 실천토록 하는 데 큰 압력이 되고 있다.

다. 기업의 환경주의 경영 실천

소비자들의 가치관 변화에 대응하여 선진국 기업들은 이미 환경문제를 경영과정에 적극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다.

세계적 多國籍企業의 최고경영자 50인으로 구성된 '지속가능한개발 경영협회'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BCSD)는 지속가능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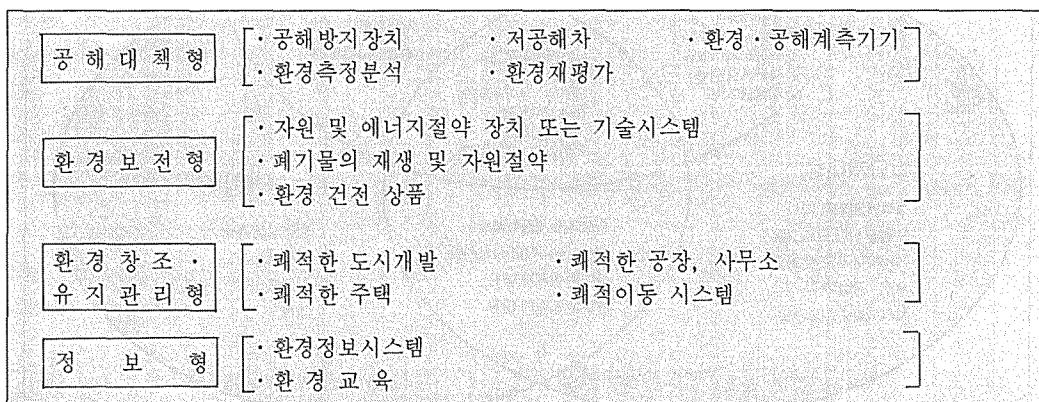
을 경영관리의 중심기준으로 한 환경주의 경영이념과 구체적 행동계획안을 마련, 금번 UNCED에서 세계기업들의 행동지침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업차원에서도 독자적으로 환경보전을 경영이념에 수용하는 한편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 경영목표를 설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 기업들의 행동배경에는 환경문제를 도외시하고는 21세기의 기업활동이 성립할 수 없다는 위기감과 사회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사회적 책임의식, 그리고 미래의 기업경쟁력은 대량생산능력보다는 자원절약과 재순환 및 재활용(Recycling) 능력, 환경이미지 개선여부 등에 좌우될 것이라는 전략적 동기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환경주의 경영을 실천하는 과정은 먼저 환경보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경영이념을 사내외에 제시하고 이에 따라 행동지침과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 뒤, 각 부문별 세부지침을 업무규정화하거나 메뉴얼화하여 이를 경영전과정에 적용해 나가는 통합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각 기업의 행동지침으로 ①환경에 전한 상품의 생산과 마케팅 ②자원·에너지 절약, 재활용 실행 ③환경관련기술 개발 ④각국의 규제를 상회하는 수준의 환경기준 설정과 준수 ⑤환경정보 공개와 환경 협력 강화 등이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주요 내용들이다.

또한 행동지침의 수행기준으로 환경영향 평가체

〈그림-5〉 환경비지니스 유형



〈자료〉 新韓綜合研究所, 日本의 環境비지니스, 1991. 7. 1

도를 채택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종래 생산, 판매, 아프터 서비스에 국한된 기업의 책임을 확대하여 상품의 탄생에서 소멸에 이르는 전과정, 즉 상품의 연구개발, 원재료 선정, 제조, 판매, 폐기 및 회수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만약 이에 의해 환경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해당 투자계획이 백지화되거나 문제상품의 제조·판매가 중단되며 설계변경, 원재료 교체 등이 결정된다.

그밖에 관리조직면에서도 환경전담부서의 설치, 자체 환경감사 실시, 환경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해 사내 종업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기업의 환경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정보공개 등對顧客 홍보면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법규제 준수차원에서 한걸음 나아가 환경문제를 신시장개척 및 사업진출 기회로 활용하려는 환경비지니스가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등장하고 있다. 환경비지니스 분야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신규수요가 증폭되어 가는 미래의 성장산업이기 때문에 선진 각 기업은 환경전 제품 및 환경기술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라. 금융기관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금융기관들도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구미의 민간은행들 가운데 고객의 높은 환경보호의식을 겨냥하여 마케팅 차원에서 환경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 환경감사를 실시하는 은행들이 나타나고 있다.

獨逸 최대의 상업은행인 *Deutsche Bank*는 「환경지향적 마케팅 전략」을 표방하고 1990년부터 본·지점을 연결하는 환경데이터 베이스망을 통해 對고객 환경관련 법률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오는 한편, 고객기업의 환경개선 노력을 기업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英國의 *National Westminster Bank*의 경우 조직내 환경전담부서를 설치하고 1992년부터 환경감사보고서를 공표할 계획으로 있다. 이 은행의 환경감사대상에는 에너지 절약, 폐기물 배출 삽감, 재활용 외에도 취급용자대상 및 기준이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러한 일부 은행들의 움직임은 금년 6월 *UNCED*

에서 채택될 「은행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선언을 계기로 더욱 구체화되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선언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약 40여 주요 민간은행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현재 *Deutsche Bank* 등 7개 은행이 중심이 되어 UNEP와 협조하에 초안을 마련중에 있다. 앞으로 금융기관의 행동지침이 될 동 선언에는 ①은행의 응자심사 항목에 기업의 환경보호규제 준수상황 반영 의무화 ②채무·환경스왑 등 환경보전을 위한 금융신상품 개발 촉진 ③은행업무가 환경보호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자업무와 환경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기업의 신용리스크 외에 環境리스크(환경소송비용, 상품불매 등) 고려, 기업별 오염배출량의 응자기준에의 반영 등에 관한 내용도 그 채택여부가 검토될 것이다.

선언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서명은행은 정기적으로 그 이행상황을 보고하게 되므로 환경보호단체의 감시가 심한 歐美銀行들의 경우 향후 은행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 맷는 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은 사회·경제 등 환경외적인 요소와 직접 연계되어 산업 및 무역, 경제전반은 물론 개개인의日常生活에 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외무역의 존도가 높고 선발개도국으로서 제반 산업시설을 급속히 확장해 나가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동향의 신속한 파악과 효율적 대응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당면과제로서 첫째, 국제적 환경규제가 당장의 통상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환경협약 교섭과정이나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반영하도록 환경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제협약의 의무이행을 위해서는 규제물질의 생산과 소비억제는 물론 관련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가입하지 않으면 통상규제

로 불이익을 당하게 될 뿐 아니라 국제적 공동노력을 외면한다는 도덕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며, 설사 가입하더라도 산업구조 조정 및 경제, 기술적 대응 능력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선발개도국인 관계로 개도국에게 공여하는 재원 및 기술이전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될 상황 뿐만 아니라 대개도국 재정지원 부담까지 떠맡게 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산업 및 기술기반에 취약한 신통공업국으로서 각종 환경규제조치를 선진국과 동일하게 취급해 나가는 것을 피해야 하지만, 아울러 다른 개도국과 항상 공동보조를 취하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국제교섭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둘째, 美國, 日本, EC등 주요 교역국에서 취하고 있는 환경정책의 입안 및 시행동향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한편, 무역제한과 연계된 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우리의 여건에 맞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기준이 설정되도록 통상교섭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GATT등 국제회의에서의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교역규제 문제에 대한 토의동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에너지低消費型 산업구조의 전환과 관련기술개발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금후 지구온난화 대책의 하나로서 화석에너지 국별수요억제, CO₂ 배출량감 등의 국제적 규제가 구체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에너지 수급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중·단기적으로는 에너지이용효율 향상(특히 화석에너지 연소효율 향상), CO₂ 배출량이 적은低公害에너지(천연가스, 原電, 메탄올 등)로의 전환, 환경세 도입에 의한 에너지수요 억제 등이, 장기적으로 에너지절약 등 생활양식의 변화, 재생가능에너지(태양, 바이오, 지열, 풍력 등) 개발보급, 태양전지 자동차 개발 등 첨단 환경보전 기술의 개발, 안전한 핵융합발전 추진 등이 중심이 될 것이다.

넷째, 제품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들도 최근의 단순 환경마케팅 모방차원에서 나아가 전략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환경대책 마련이 요망된다.

환경보호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차원에서 환경관련 투자증가, 대체물질 및 환경청정 기술개발 등 다양한 자체노력을 강화하여 이를 새로운 시장개척의 기회로 활용해 나가는 적극적 대응이 요망된다. 더우기 EC의 환경감사제 도입 움직임이나 국제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에서의 기업 환경평가 도입 움직임은 향후 기업의 환경등급이 신용등급 못지 않게 기업평가의 중요 척도가 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환경기준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기준 예시제 등을 활용하여 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환경관련기술에 대한 지원강화,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정부와 기업의 노력 끝지 않게 국민 개개인의 의식개혁도 중요하다. 물질적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물자절약 등 겸소한 소비생활 조성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의식의 고취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 1) 1968년 4월 이탈리아의 실업가 A.페체이의 제창으로 세계의 정계·재계·학계 지도급 인사가 로마에서 결성한 국제 민간연구기관. 주로 인구·자원·환경 등 세계적 공통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이에 의거한 제언을 주요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보고로는 '성장의 한계'를 비롯, '전기를 맞는 인간사회(Mankind at the Turning Point)', '낭비의 시대를 넘어서' 등이 있음
- 2) EC 초안에 따르면 환경마크는 상품의 탄생에서부터 폐기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등중 상품중 가장 해를 덜 끼치는 상품에 제공되며, 기준제정 및 심사는 EC에서, 개별 부여 및 신청접수는 각 회원국에서 실시함. 부여기준으로는 ①천연자원 및 에너지 사용 최소화 정도 ②오염물질의 배출량 정도 ③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정도, ④소음발생 회피 등이 중점 고려요소로 됨.
- 3) OECD, *Environmental Labelling in OECD Countries*, 1991. ♦